국회에서 의결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6년 9월 29일

국 무 총 리 한 성 숙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장관 윤 호 중
(법무부 소관)

국 무 위 원
국방부장관 강 신 철

◉법률 제22006호
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”을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: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
2.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: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,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「형사소송법」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,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,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.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